

2012. 10. 8 Vol. 40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13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4천억 원 편성
아세안 및 한·중·일,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거시경제 동향

2012년 9월 소비자동향지수

현장 여론 조사

(현지통신원·KREI 리포터)
농작업 상해 실태와 대응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2011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식품부 '13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4천억 원 편성

※ 본 자료는 9월 25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2013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4천억 원 편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3년 국가 예산안¹⁾

- '13년 총수입은 '12년 대비 8.6% 증가한 373.1조 원으로 전망
- '13년 총지출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342.5조 원으로 편성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0.3%)
-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12년 전망 34% → '13년 33.2%)

<2013년 국가 예산안>

단위: 조 원, %

구분	'12예산		'13(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343.5	9.3	373.1	8.6
◇ 총 지 출	325.4	5.3	342.5	5.3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4.3 (△1.1)		△4.8 (△0.3)	
◇ 국가채무 (GDP대비)	445.9 [445.2]** (33.3) [(34.0)]**		464.8 (33.2)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은 '12년 전망치

- 한편, 2013년 국가 총지출(342.5조 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예산(18.3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

- 국가 총 예산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05년) 6.6% → ('08년) 6.2% → ('12년) 5.6% → ('13년) 5.3%

1) 2013년 국가 예산안은 9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자료를 인용함.

□ 2013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안

○ (총지출 규모) 농식품부 2013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5조 4,102억 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19억 원 증)

-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 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 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2013 농림수산물분야 예산·기금(안)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12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 총 지 출	154,083	154,102	19	0.01
○ 농업·농촌 ¹⁾	127,210	126,332	△879	△0.7
○ 수산업·어촌	13,633	14,628	995	7.3
○ 식품업	6,881	7,520	639	9.3
○ 기타*	6,358	5,622	△737	△11.6

주 1) 감소 요인 : (농업·농촌) 4대강관련 사업 완료(△1조 1,550억 원, △83.3%)

(기타) 소속기관 청사이전비용(△836억 원, △66.6%) 감소 등

○ 농촌진흥청(1조 626억 원), 산림청(1조 8,171억 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물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3,466억 원으로 '12년(18조 1,322억 원) 대비 1.2%(2,144억 원) 증가

- 단, 4대강 완료 소요분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2년 대비 8.2% 증가

* 4대강 제외 시 : ('12) 16조 7,463억 원 → ('13) 18조 1,156억 원

□ 농림수산물분야 주요 이슈별 2013년 예산안 특징

○ 한·미 및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금년대비 16% 이상 확대 편성

※ 2조 6,708억 원 → 3조 1,143, 증 16.6%

○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1조 7,466억 원을 투입할 계획

※ 1조 4,720억 원 → 1조 7,466, 증 18.7%

-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 반영
※ 1조 8,760억 원 → 2조 323, 증 8.3%
- 가뭄, 태풍,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0% 이상 증액
※ 1조 2,930억 원 → 1조 4,265, 증 10.3%
-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 1조 5,995억 원 → 1조 6,335, 증 2.1%
-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
-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7개 사업
에 총 4,284억 원을 반영
 -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00
억 원 규모의 첨단온실 관련 저리 융자사업을 새로 도입
 - 수출 잠재력이 큰 주요 수산물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 전략품목육성
지원 사업(153억 원)을 추진
 -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기획(112억 원)
 - 노후화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2억 원)을 총 4개 지역에 우선 실시
 -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 원)을 본격 추진
 -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 원)도
추진할 계획

주요 농정 이슈_2

아세안 및 한·중·일,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 본 자료는 9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아세안 및 한·중·일,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경과

- '79년 아세안 지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식량안보비축제 (AFSR : Asean Food Security Reserve)” 합의
- AFSR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자 '01년 ASEAN+3 농림장관 회의 시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쌀비축시범사업(EAERR: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을 결정하여 '04~'07년까지 추진
- '08년부터 본사업인 아세안+3 쌀 비축사업(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위원회 구성
- 논란이 있었던 APTERR위원회 의장 선정은 매년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회원국 중 1개국과 +3(한·중·일) 중 1개국이 공동의장을 맡기로 합의
- '11.10월 제11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PTERR 협정문 서명
-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비준 및 기탁이 완료되어 '12.7월 협정 발효

□ 사업개요

- '**ASEAN+3 비상 쌀 비축 제도**(APTERR)²⁾는 ASEAN+3 국가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각국이 **약정한 쌀을 상호 지원하는 제도**임.
- (비축방식) 쌀을 원조하겠다는 공약만 하는 **약정방식(earmark)**과 약정한 쌀을 APTERR 사무국에 제공하는 **비축방식(stockpile)** 존재

2)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12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의 장·차관급이 참석하여 지난 7월 12일 발효된 'ASEAN+3 비상 쌀 비축 제도(APTERR)'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약정물량) **우리나라는 약정방식으로 787천 톤의 비축량 중 15만 톤의 쌀을 제공할 계획**

※ 중국은 300천 톤, 일본은 250천 톤 비축쌀을 지원할 계획임

- (기금 및 운영비용) **한·중·일은 협정발효 후 5년 내 각각 100만 불의 운영기금 납부**하고, 기금조성 전 5년간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매년 7.5만 불 납부

<ASEAN+3 비상 쌀 약정 물량>

단위: 천 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 (향후계획)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 전으로 하반기 중으로 비준절차를 개시하여 조속히 비준 완료 추진

※ 본 자료는 9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9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중 99로 전월과 동일

< 구성지수의 기여도 >

구 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심리지수 ¹⁾		98	100	101	104	105	101	100	99	99
(전기 대비 지수차) ²⁾		△1.1	2.5	0.2	3.2	1.2	△4.3	△0.8	△0.7	△0.6
구 성 지수의 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3	0.5	△0.3	0.5	0.5	△0.4	△0.2	0.0	△0.2
	생활형편전망	△0.2	0.7	0.0	0.6	0.4	△0.7	△0.4	△0.2	0.0
	가계수입전망	0.0	0.3	0.2	0.5	0.0	△1.1	0.0	△0.2	0.0
	소비지출전망	△0.2	0.5	0.0	0.5	△0.2	△0.7	0.0	0.2	△0.4
	현재경기판단	△0.2	0.2	0.1	0.5	0.3	△0.5	△0.2	△0.3	△0.1
	향후경기전망	△0.2	0.3	0.2	0.6	0.2	△0.9	0.0	△0.2	0.1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³⁾**는 전월대비 1p 하락, **생활형편CSI**는 전월과 동일
○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과 동일,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2p 하락

<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

구 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3	86	84	87	90	88	87	87	86	(△1)
생활형편전망CSI	90	94	94	97	99	95	93	92	92	(-)
가계수입전망CSI	95	96	97	99	99	95	95	94	94	(-)
소비지출전망CSI	106	108	108	110	109	106	106	107	105	(△2)

3)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1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87로 전월대비 3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2p 하락,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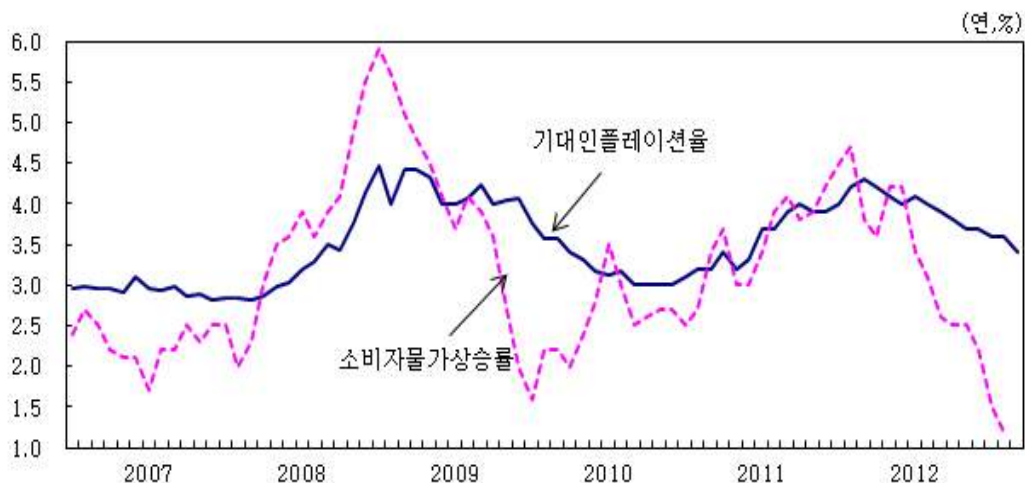
<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

구 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5	68	70	77	81	74	71	67	66	(△1)
향후경기전망CSI	76	80	82	90	93	81	81	78	79	(+1)
취업기회전망CSI	83	88	90	92	94	88	87	84	87	(+3)
물가수준전망CSI	144	142	141	137	137	137	136	141	139	(△2)
금리수준전망CSI	117	115	116	115	115	107	105	96	97	(+1)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4%로 전월대비 0.2%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2.5~3.5%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45.8%로 전월대비 14.3%p 증가한 반면 3.5%를 초과하여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은 40.7%로 15.6%p 감소

<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 조사 개요⁴⁾

- 조사 대상: 현지통신원과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
- 조사기간: 2012.9.21~9.28
- 조사방법 및 응답: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292명

□ 조사 결과

○ 현재의 건강 상태

- 양호(매우 포함) 65.0% > 보통 26.9% > 좋지 않음(매우 포함) 8.0% 순
※ 단, 농업경영 및 외부 활동이 왕성한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 감안해야

○ 최근 몸이 불편했거나 현재 불편한 경우 주 원인

- 농부중(관절통, 호흡곤란 등) 62.2% > 일반적인 질병 20.0% > 기타 상해 12.2% > 농작업 상해 5.6% 순
→ 농작업 상해는 60세 이상이 60세 미만보다 3배 이상 높고, 과수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음.

○ 최근 5년 내 농작업 상해 경험

- 1회 54.6% > 2-5회 39.3% > 6회 이상 6.2% > 없다 0%
→ 5년 내 농작업 상해 횟수는 평균 2.53회로 2년에 1회 꼴로 상해가 발생

○ 농작업 상해 주 원인

- 농작업 사고(추락, 찰과상, 허리 다침 등) 71.4% > 농기계 사고

4) 상기 조사는 월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간이 조사(5문항 내외)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동향 분석실 김동원(4227), 박혜진(4228)).

18.4% > 기타 사고 7.8% > 농약에 의한 사고 2.4% 순

→ 농작업 사고는 축산, 농기계 사고는 수도, 농약사고는 과수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음.

○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올해 가입 실태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농작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공제로 가운데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대략 25% 내외의 자부담이 있는 공제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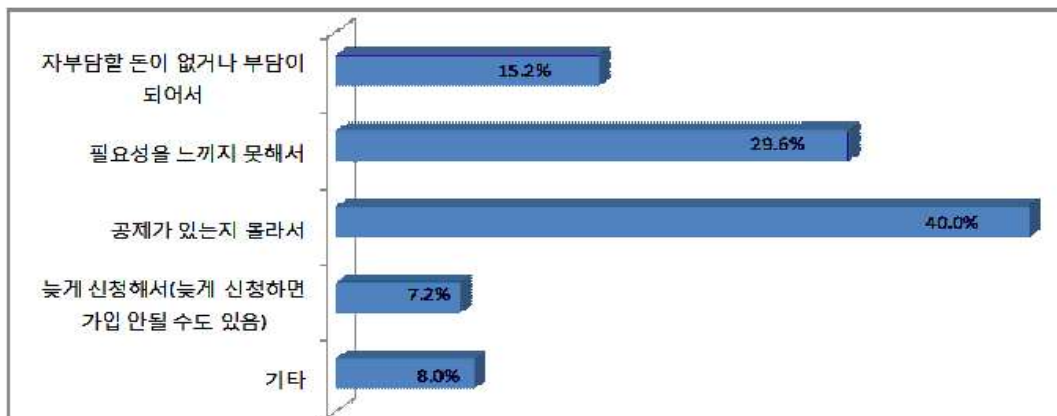
- 가입 53.3% > 미가입 46.7%

○ 가입하지 않은 이유

- 공제 미 인지 40.0% > 필요성을 못 느껴 29.6% > 자부담 능력 없어 15.2% > 늦게 신청 7.2% > 기타 8.0%

→ 공제 유무에 대한 인지 부족이 10명 중 4명으로 홍보 강화 필요

<농업인재해안전공제 미 가입 이유>



□ 농작업 상해와 관련한 기타 의견 요지

○ 농작업 상해 실태

- 주로 잡초 제거를 위한 예취기 사고가 빈번한 편이고, 농기계 운행 시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농작업 재해는 농민들이 함부로 기계를 다루고 정비는 거의 하지 않

으며 보관 또한 **허술하게 관리**하는 데서도 발생

- 하우스 내에서 오랜 동안 작업을 하다보니 무릎 관절 질병이 많음. 수술보다는 장시간 물리치료가 필요하니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음.
- 경운기 사고가 많은 편인데 가격은 올랐어도 안전성은 강화되지 않고 있음.
- 경사가 심한 임야에서 뚝은 감을 생산하고 있음. 경사가 심하면 작업 기계가 이동하는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작업로 폭이 더 넓게 만들어져야함**. 그러나 수종변경으로 임야를 개간하고자 할 때만 작업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을 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임.
- 급경사에 감나무를 심어 성공했으나 감나무를 심은 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정해진 법에 따라 작업로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계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풀베기 작업도중 상처를 입었어도 병원이 멀리 있어 상비의약품으로만 처리
- 농기계가 가격에 비해 정밀성이 부족하며 노후가 빨리 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음.
- 얼마 전 마을분이 트랙터 사고로 사망함. 좁은 농로여서 119 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농로 확포장 등 여건 확충이 절실함.
- 좁은 작업로 때문에 고가의 ss분무기를 전복시켰고 운반기를 2번 전복시켰음.

○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관련 의견**

-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음. 공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홍보가 필요함.
-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조건을 완화해 모든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농작업재해안전공제는 공제대상 지역에 과반 수 이상 피해가 있어야 하며 **개별적 피해는 보상이 안되는 단점**이 있음.
- 소규모 농업인은 농기계를 빌려 쓰기 때문에 공제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서 부담일 수밖에 없음.
- 농작업재해안전공제는 마을단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입할 수가 없음.

○ 농작업 상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정책지원 요구

- 농로 확포장 등 사고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
- 농작업 상해 예방을 위한 기초단체와 농기계회사 등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 농업인들 스스로 농기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와 점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농로와 일반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농로에는 차량통행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함.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논 피사리 작업을 실시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가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낫에 베어 인대까지 상해를 입었음. 이런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고해 너무 큰 재정적인 손해가 예상됨. 농작업 상해시 산재적용 논의가 필요함.

□ KREI 연장 리포터

▶ 농작업 상해 실태와 대응

○ 농기계 조작 안전 교육과 농약표시 개선 등 사고예방 대책 필요

- 농번기가 되면 크고 작은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기계 운전부주의, 노후 농기계 정비 불량, 좁고 급경사인 농로가 원인이

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김종근, 전남 순천>

- 농약살포 및 방제시 중독사고가 발생하거나 더운 날씨에 방제복 착용으로 인한 일사병, 고령화에 따른 경운기 조작미숙으로 인한 전복사고 등 농촌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광역살포기, 무인 헬리콥터 활용 또는 방제기 지원 등을 통해 농약을 공동 방제함으로써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요구됨.<전재경, 경북 의성>
- 농약 살포시 더운 여름에는 방제복을 입었다 해도 땀과 약물이 몸에 닿아 농약 중독으로 인한 피부병을 여러 번 경험했고 아직도 가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음. 비온 후 또는 집단병충해 발생 시 몇 차례만이라도 무인 헬기를 이용해 공동방제를 해준다면 농약중독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오인하, 경남 창원>
- 농기계를 주의 없이 작동하다보면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작동요령을 배우고 숙지해야함. 농약의 설명서 글씨가 너무 작은 것이 농약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약설명서에 인체에 해로운 문구는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로 써주고 주의사항도 꼼꼼히 적어주어야 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저희 작목반은 작목반 차원에서 농작업 안전보험을 부부와 함께 일괄적으로(본인 반부담) 들어 놓아서 매년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농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최시훈, 부산 기장>

○ 농작업안전공제 보상기준 개선, 농작업상해 산재처리 요망

- 농협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 후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 그런데 180일 이내 치료기간까지만 보상해주고 그 이후는 보상이 제외되었음. 상해가 중상일 경우 이 기간이 더 짧음. 나이가 많은 농민은 경운기 사고 등 농작업상해가 많은 편인데 이런 보상기준은 현실화해야함. <옥을석, 경남 거제>

- 농기계가 워낙 비싸다보니 보험료 또한 많이 내야해서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음. 자동차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대신 보험수가를 조금 더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음. 연초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시 일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김기원, 경북 영주>
- 남편이 사료 값 절감을 위해 파쇄기를 구입해서 직접 파쇄 작업을 하던중 검지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갔는데, 사고로 인한 수술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는데도 천만 원이나 들었음. 그런데 농협에서 단체로 든 보험에서 120만원이 나와 수술비를 보태는 정도였음. 치료비 보상수준의 보상 현실화가 필요함.<송인숙, 강원 강릉>
- 농업인들은 농기계에 의한 사고, 제초제와 살충제에 의한 농약중독, 과수나 고추농사 비닐하우스작업 등과 같이 불편한 작업자세로 인한 직업성 근골성계질환, 돈사나 축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은 각종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내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와 천식 및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농업인도 산재보호가 필요한데 반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업 중 상해가 발생하여도 고스란히 자비로 치료 받아야함. 농작업 안전공제는 보상수준이 미미하여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하루빨리 농업인 안전공제를 농업인 산재보험으로 바꾸어야함<김병철, 경남 김해>

▶ 기타 농업농촌 연장 여론

○ 오지 농가일 수록 태풍피해 복구 등 일손지원 못 받아

-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복구과정에서 산골 외진 농가들은 길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하우스가 망가지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봉사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산골로 들어갈 수록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독농가가 많은데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농가가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구석구석을 잘 조사해 지원해 주기 바람.
<최영호, 충남 부여>

○ 멧돼지 피해 심각, 포획 시 보상제도 필요

- 요즘 농촌에서는 멧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음. 피해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막심함. 벼, 단감, 고구마 등 돈벌이가 되는 전 품목이 거의 피해 작목임. 멧돼지를 잡으면 정부 측에서 보상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 듯함.<정동연, 경남 고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과 작부체계 등 연구 강화 필요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적합한 작목, 작부체계, 순환재배, 농지의 표토 유실 내지 침착을 예방하는 일, 작목 변경에 따른 유통이나 소비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연구를 강화해 대처해야만 식량안보, 국민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임충빈, 경기 안성>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과다

- 농지를 전용할 때 그 만한 대체농지를 조성하고자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찬성함. 그러나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할 때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함. 이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지금 그 부담금이 과다함. 물론,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과함은 옳다고 보지만, 농업인이 가공시설이나 농업 부대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감면해야 하고 기본 효율도 조정되어야함. <임충빈, 경기 안성>

※ 본 자료는 9월 28일~10월 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마리당 수만 원 적자…출구도 안보여”

- 돼지가격이 폭락세를 보이며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공황상태에 직면**. 돼지가격이 추석직전인 지난달 26일 4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천 원대로 폭락함으로 인하여 농가는 돼지 1마리를 출하할 때 마다 4~5만 원씩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 이는 **명절직전 출하가 몰린데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출하 지연됐던 물량까지 쏟아져 홍수출하 되었기 때문**. 문제는 FMD 재입식 농가들이 출하에 본격 가담하는 등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축돼 있는 돼지고기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 이러한 시장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더구나 추석이후 2주 동안은 육류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점은 돼지고기 시장의 단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불황의 터널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

자료 : 축산신문(2012.10.4).

□ 시솿는 무·배추값…김장 걱정 되네

-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배추와 무 도매가격이 1주일 새 10~20% 넘게 올라 ‘김장 물가’ 불안을 조성. 4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상품 10kg)의 평균 경락가**는 1만 2,602원으로 1주전 (1만 297원)보다 **22%**, **무 가격(상품 20kg)**은 1만 9,629원으로 1주전 (1만 7,680원)보다 **11% 각각 상승**. 이는 고랭지배추와 무가 올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데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산지에서 조기 출하한 물량이 많아 시장에 공급된 양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 식품업계에선 올 김장철에 직접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 김치를 사 먹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힐 것’으로 전망.

자료 : 한국경제신문(2012.10.5).

□ FTA 따른 무역이득, 일부 공유 가능

-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분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이로써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이익불균형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이익산업의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홍문표 의원은 “FTA는 국익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전체”이며 “손해 보는 국민을 이익 보는 국민이 상생의 정신,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힘.

자료 : 축산신문(2012.9.28).

□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 기업 썸짓돈으로 전락?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주홍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09년 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23개 업체에 665억 원을 융자했으나 국내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융자받은 업체는 24개지만 1개 기업은 농장형과 유통형 중복 융자를 받은 것으로 밝힘. 특히 10억 원 이상 융자금을 지원받은 14개 기업들 중 2개 기업을 제외한 12개 업체는 현재까지 현지 확보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단 1톤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확보한 물량으로 보면 **23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은 모두 199,516톤**이며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물량을 전체의 0.4%인 804톤에 불과.** 이같은 기업의 썸짓돈 논란에 대해 황주홍의원은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현지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를 강화를 주장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에 대량 운송을 통해 운송단가를 낮출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그러나 정부에서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국내 실수요 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통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반입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답변.

자료 : 농업축산신문(2012.10.3).

□ 다시 고개드는 양분총량제...축산입지 위협

- 축산현장에서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강화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 조치에 이어 양분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음. 양분총량제 논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도 최근 사육두수 과잉으로 빚어진 가격폭락의 해결 방안으로 양분총량제를 통한 수급조절, 즉 사육두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 그러나 전문가와 축산업계에서는 양분총량제를 통한 가축 사육 두수를 조절하기 보다는 자급률 설정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을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 이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성 등이 조화로울 때 가능한 것인 만큼 양분총량제 라든가 무허가 축사 폐쇄 등 규제 중심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자료 : 축산신문(2012.9.28).

연구 지원 정보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2011년 기준)

※ 본 자료는 9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2011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농·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 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11. 12. 31. 기준
 - ※ 법인의 조사대상 여부, 종사자수,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 경지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양식장시설, 어선보유척수,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등을 조사
 - 조사대상 기간 : 2011. 1. 1. ~ 12. 31. (1년간)
 - ※ 농작물 재배면적, 사업비율, 연종출어일수, 가축 및 가금 연간판매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조사실시 기간
 - 우편조사 : 2012. 3. 5. ~ 3. 30.
 - 전화조사 : 2012. 3. 12. ~ 4. 6.
 - 본 조 사 : 2012. 4. 12. ~ 4. 25.
 - 보완조사 : 2012. 8. 27. ~ 9. 4.
- 조사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설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대상 산업에 포함되는 일반 회사법인

□ 주요 조사 결과

○ 농어업법인은 11,694개로 전년(10,515개)대비 11.2% 증가

- 농업법인은 10,871개(93.0%)로 전년대비 11.6% 증가

※ 영농조합법인은 8,727개(80.3%), 농업회사법인은 2,144개(19.7%)로 전년대비 각각 7.6%, 31.3%씩 증가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 현황>

단위: 개, %

연도	계	농업법인	영농조합		어업법인	영어조합	
			법	인		법	인
2010년	10,515	9,740	8,107	1,633	775	764	11
(구성비)	(100.0)	(92.6)	(83.2)	(16.8)	(7.4)	(98.6)	(1.4)
2011년	11,694	10,871	8,727	2,144	823	800	23
(구성비)	(100.0)	(93.0)	(80.3)	(19.7)	(7.0)	(97.2)	(2.8)
증감	1,179	1,131	620	511	48	36	12
증감률	11.2	11.6	7.6	31.3	6.2	4.7	109.1

○ 사업유형이 주로 유통판매인 법인 비중 증가

- 농업법인 중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5.1%,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났으며, 유통판매만 3.9%p 비중 증가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

연도	법인수	농업생산1)	농업생산 이외				
			소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2)	기타사업3)
2010년	8,361	3,112	5,249	1,568	1,730	613	1,338
(구성비)	(100.0)	(37.2)	(62.8)	(18.8)	(20.7)	(7.3)	(16.0)
2011년	9,695	3,401	6,294	1,797	2,385	636	1,476
(구성비)	(100.0)	(35.1)	(64.9)	(18.5)	(24.6)	(6.6)	(15.2)
증감	1,334	289	1,045	229	655	23	138
증감률	16.0	9.3	19.9	14.6	37.9	3.8	10.3

1) 농업생산에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포함

2) 농업서비스에는 영농대행을 포함

3) 기타사업에는 관광 및 음식업,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업 등을 포함

○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66,907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으나 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농업법인 근로자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법인수	종사자수 합계1)	상시근로자			임시및일용 근로자	법인당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10년 (구성비)	8,361	60,118 (100.0)	41,742 (69.4)	19,751 (32.9)	21,991 (36.6)	18,376 (30.6)	7.2
2011년 (구성비)	9,695	66,907 (100.0)	47,047 (70.3)	20,898 (31.2)	26,149 (39.1)	19,860 (29.7)	6.9
증감	1,334	6,789	5,305	1,147	4,158	1,484	-0.3
증감률	16.0	11.3	12.7	5.8	18.9	8.1	-4.2

1) 종사자수는 2011.12.31기준 종사자임.

○ 상시근로자 규모는 「4인 이하」 법인이 약 66.5%이며, 「5~9인」 법인은 23.2%로 나타남.

<상시근로자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연도	법인수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2010년 (구성비)	8,361 (100.0)	5,276 (63.1)	2,189 (26.2)	855 (10.2)	41 (0.5)
2011년 (구성비)	9,695 (100.0)	6,450 (66.5)	2,248 (23.2)	952 (9.8)	45 (0.5)
증감	1,334	1,174	59	97	4
증감률	16.0	22.3	2.7	11.3	9.8



○ 농업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10.5ha로 전년대비 7.9% 감소

-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32.6%, 밭 면적은 67.4%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논 면적은 18.7% 감소한 반면, 밭 면적은 18.0% 증가

※ 2011년 말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698천ha)의 2.0% 차지 (2011년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0.5ha로 전년에 비해 7.9% 감소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개, ha, %

연도	법인수	보유 법인수	경지 면적				법인당
			계	논	밭	과수	
2010년	8,361	2,958	33,792	13,948	19,844	805	11.4
(구성비)	(100.0)	(35.4)	(100.0)	(41.3)	(58.7)	(2.4)	
2011년	9,695	3,319	34,746	11,340	23,406	1,460	10.5
(구성비)	(100.0)	(34.2)	(100.0)	(32.6)	(67.4)	(4.2)	
증감	1,334	361	954	-2,608	3,562	655	-0.9
증감률	16.0	12.2	2.8	-18.7	18.0	81.4	-7.9

○ 농업법인 재배면적은 총 38,991ha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

- 재배면적 중 노지재배 면적은 95.1%, 시설재배 면적은 4.9%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노지재배 면적은 2.0%, 시설재배 면적은 17.6% 감소
- 농업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11.3ha로 전년에 비해 11.0% 감소

<농업법인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개, ha, %

연도	법인수	보유 법인수	총재배면적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2010년	8,361	3,160	40,143	12.7	2,532	37,812	14.9	897	2,332	2.6
(구성비)	(100.0)	(37.8)	(100.0)			(94.2)			(5.8)	
2011년	9,695	3,452	38,991	11.3	2,856	37,069	13.0	869	1,921	2.2
(구성비)	(100.0)	(35.6)	(100.0)			(95.1)			(4.9)	
증감	1,334	292	-1,152	-1.4	324	-743	-1.9	-28	-411	-0.4
증감률	16.0	9.2	-2.9	-11.0	12.8	-2.0	-12.8	-3.1	-17.6	-15.4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정부보조금을 받은 기업체는 4,191개로 전년에 비해 28.6% 증가
- 정부융자금에 있는 법인은 933개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

□ 용어해설

-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창설한 조직(예: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예: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합자회사 등)

- 상근출자자: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출자자 공동운영: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참여(노동력제공)를 하며 운영하는 형태
-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이나 법인의 경지를 출자자 각자가 운영하는 형태

- 경영경지면적: 조사 기준연도에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
- 재배면적: 경영경지면적에 1년 동안 직접 재배한 모든 작물의 연면적

- 노지재배: 자연상태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것(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비닐피복 포함)
- 시설재배: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재배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